

2019년도 소방직 소방법규 해설

PRIDE 동부

2019년도 소방직 경력경쟁채용

담당 : 문승철 교수

동부고시학원

062-233-0509

1. 「소방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대상물” 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 ② “관계지역” 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③ “소방본부장” 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을 말한다.
- ④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자위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정답 : ④

- ④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자위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을 말한다.

5.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6. “소방대장”(消防隊長)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화재경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할 수 있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소방청장은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등을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 ②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는 옳은 내용이다.

✓ 오답정리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30일(→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소방청장(→ 시도지사)은/는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등을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① 삭제 <2018. 3. 20.>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 2.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 3. 소방설비의 설치 명령 현황
 - 4. 소방교육의 실시 현황
 - 5. 소방훈련의 실시 현황
 - 6. 그 밖에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사항

2019년도 소방직 소방법규 해설

할 수 있다는 믿음

PRIDE 동부

2019년도 소방직 경력경쟁채용

담당 : 문승철 교수

동부고시학원

062-233-0509

3. 「소방기본법」상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설명이다.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가)은/는 소방박물관을, (나)은/는 소방체험관(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 | | |
|---------|-------|---------|-------|
| (가) | (나) | (가) | (나) |
| ① 소방청장 | 시·도지사 | ②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
| ③ 시·도지사 | 소방본부장 | ④ 시·도지사 | 소방청장 |

정답 : ①

가 - 소방청장, 나 - 시·도지사

✓ 「소방기본법」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4.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에 따르면 소방청(가)명 이상, 소방본부(나)명 이상, 소방서(다)명 이상이다.

- | | | | | | |
|-----|-----|-----|-----|-----|-----|
| (가) | (나) | (다) | (가) | (나) | (다) |
| ① 1 | 1 | 1 | ② 1 | 2 | 2 |
| ③ 2 | 1 | 2 | ④ 2 | 2 | 1 |

정답 : ④

가 - 2, 나 - 2, 다 - 1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3]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제7조의11관련)

배치대상	배치기준(단위 : 명)	비고
1. 소방청	2 이상	
2. 소방본부	2 이상	
3. 소방서	1 이상	
4. 한국소방안전협회	본회 : 2 이상	

	시·도지부 : 1 이상	
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이상	

5.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 중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②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 ③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경과 후 매각이나 폐기로 손실을 입은 자
- ④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 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정답 : ③

- ③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경과 후 매각이나 폐기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①②④의 경우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1. 제16조의3제1항(=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2. 제24조제1항(=소방활동종사명령)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강제처분)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위험시설등에 대한 긴급조치)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년도 소방직 소방법규 해설

할 수 있다는 믿음

PRIDE 동부

2019년도 소방직 경력경쟁채용

담당 : 문승철 교수

동부고시학원

062-233-0509

6.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로 옮지 않은 것은?

- ①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②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③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④ 시·도지사가 출입을 허가한 사람

정답 : ④

④ **사·도지사(→ 소방대장)**가 출입을 허가한 사람은 소방활동 구역의 출입자가 아니다. ①, ②, ③은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에 해당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법 제 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2.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 3.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7.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옮지 않은 것은?

- ①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 ④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공동주택의 건축주)은/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① 제7조의12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 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행령 [별표2의 5]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제7조의13제2항 관련) 비교**

1. 전용구역 노면표지의 외곽선은 빗금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를 30센티미터로 하여 50센티미터 간격으로 표시한다.

2.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옮지 않은 것은?

- ①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난로’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작업장에서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정답 : ④

④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작업장에서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10(→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

2019년도 소방직 소방법규 해설

2019년도 소방직 경력경쟁채용

담당 : 문승철 교수

동부고시학원

062-233-0509

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제5조관련)

불 꽃 을
사용하는
용접 · 용
단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화재 또는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오답정리
- ②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소방기본법」상 소방력의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소방청장은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 · 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 ④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 · 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 ③

-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 · 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 오답정리

- ①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② **소방청장(→ 시 · 도지사)**은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 · 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행정안전부령(→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②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③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 ④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 시공 · 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정답 : ④

- ④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 시공 · 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된다. ①,②,③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 시공 · 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10. 「소방기본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옳은 것은?

- ① 화재 또는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②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④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정답 : ①

2019년도 소방직 소방법규 해설

할 수 있다는 믿음

PRIDE 동부

2019년도 소방직 경력경쟁채용

담당 : 문승철 교수

동부고시학원

062-233-0509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신축건축물로서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로 옳은 것은?

- ①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기숙사
- ②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아파트
- ③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2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복합건축물
- ④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공항시설

정답 : ④

④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공항시설은 성능위주설계의 대상이다.

✓ 오답정리

- ① 연면적 10만(\rightarrow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기숙사
- ②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아파트
- ③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20층(\rightarrow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복합건축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별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과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원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④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①

①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원가(\rightarrow 시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손실 보상)

- ① 법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무창층이 되기 위한 개구부의 요건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크기는 지름 (가)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나)할 수 있는 크기일 것
-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다)까지의 높이가 (라)미터 이내일 것

(가) (나) (다) (라)

- ① 50 내접 윗부분 1.2
- ② 50 내접 밑부분 1.2
- ③ 50 외접 밑부분 1.5
- ④ 60 내접 밑부분 1.2

정답 : ②

2019년도 소방직 소방법규 해설

2019년도 소방직 경력경쟁채용

담당 : 문승철 교수

동부고시학원

062-233-0509

가 - 50, 나 - 내접, 다 - 밑부분, 라 - 1.2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内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빙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지하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가) 이상이고 높이가 (나) 이상이며 길이가 (다)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라) 이상)인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마)

(가) (나) (다) (라) (마)

- | | | | | |
|---------|-------|------|-------|-----|
| ① 1.5 m | 2 m | 50 m | 500 m | 공동구 |
| ② 1.5 m | 1.8 m | 30 m | 300 m | 지하가 |
| ③ 1.8 m | 2 m | 50 m | 500 m | 공동구 |
| ④ 1.8 m | 1.8 m | 50 m | 500 m | 지하가 |

정답 : ③

가 - 1.8m, 나 - 2m, 다 - 50m, 라 - 500m, 마 - 공동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28. 지하구

가.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인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의 경우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소방설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②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비상방송설비
- ③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 ④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정답 : ②

②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비상방송설비는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①, ③, ④는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이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가. 소화기구
- 나. 비상경보설비
-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 라. 피난구조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6(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 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1.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2019년도 소방직 소방법규 해설

할 수 있다는 믿음

PRIDE 동부

2019년도 소방직 경력경쟁채용

담당 : 문승철 교수

동부고시학원

062-233-0509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방시설·피난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 ② 특별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③ 특별소방대상물에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 ④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정답 : ③

③ 특별소방대상물에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참고

- ① 소방시설·피난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특별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정답 : ④

④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

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ㄱ.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방송용 송수신탑
- 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 등을 하려는 학교시설은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ㄷ.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ㄹ.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① ㄱ, ㄴ, ㄷ
③ ㄱ, ㄷ, ㄹ

- ② ㄱ, ㄴ, ㄹ
④ ㄴ, ㄷ, ㄹ

정답 : ②

② ㄱ, ㄴ, ㄹ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해당되며, ㄷ은 동의 대상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오답정리

- ㄷ.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150(→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 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 나.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2019년도 소방직 소방법규 해설

2019년도 소방직 경력경쟁채용

담당 : 문승철 교수

동부고시학원

062-233-0509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노인 관련 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7.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0.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밑줄 친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 ②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 ③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 ④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하는 경우

정답 : ③

③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100(→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